붙임1.

한국모태펀드 (중기부 소관)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0년도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개 요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9,000억원 이내
투자 조건		·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출자분야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
출자대상*	①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②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⑤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으로 창업자·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접수 : 2020년 3월 12일(목), 14:00 (온라인 접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온라인 및 현장접수 모두가능 * 소재부품장비(프로젝트) : 2020년 3월부터 매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
조합 결성 시한		· **최초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도약단계 펀드는 처음 3개월 연장 이후에도 펀드 결성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내 조성이 완료되어야 함

* 출자대상 중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일 이후 결성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변경 예정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산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신청가능 조합형태
창업 단계	창업 초기	일반	일반	1,300	2,500	60%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루키[1]	1,000	1,900	60%	
			소계	2,300	4,400	60%	
		개인투자 조합[2]	일반	100	180	60%	개인투자조합
			지방[3]	100	180	60%	
			소계	200	360	60%	
		소계		2,500	4,800 내외	60%	
	청년창업			600	1,100	60%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술지주[4]		일반	90	150	60%	개인투자조합
			지방[3]	90	150	60%	
			소계	180	300	60%	
	여성기업			120	200	60%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소셜임팩트			200	350	60%	
	소재 부품 장비	일 반		300	500	60%	
		프로젝트[5]		300	600	50%	
		소계		600	1,100	60%	
	지방	지방기업		200	350	60%	
		규제샌드박스		300	500	60%	
		소계		500	850	60%	
	R&D 매칭펀드[6]			500	500	100%	
도약 단계 (Jump -Up)	혁신성장			1,200	3,000	40%	
	스케일업			1,000	2,500	40%	
	M&A			1,600	4,000	40%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합 계				9,000 이내	18,700 내외		

1) 창업초기 루키분야는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에 속하는 운용사가 대상
①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② 등록(설립) 3년 이내인 창업투자회사
③ 운용중인(해산총회 이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400억원 미만인 창업투자회사

2) 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분야 신청가능 운용사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엔젤, 액셀러레이터(겸영 지주회사 제외)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3)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용사 대상으로 출자하고, 지방투자 60% 의무 부여 (적격 자조합이 부족시 일반과 통합하여 선정)

4) 기술지주 분야 신청가능 운용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에 한하며, 이들 운용사는 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분야에 신청할 수 없음

5)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수시접수로 진행

6) R&D 매칭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운용하여 민간 운용사와 매칭방식으로 투자하며 세부 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창업초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또한, 모태펀드가 정한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모태 출자비율을 60%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하되, 출자비율 50%를 가점상한(최대3점)으로 설정 (출자비율 50% 미만도 제안가능)
개인투자조합	○ **(일반)** 창업초기 분야와 주목적 투자 대상 동일함 ○ **(지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공통) 펀드당 모태펀드 최대 출자규모는 30억원 이내 *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인 경우 법 제19조의5에 의거 초기창업자(업력 3년이내)에만 투자하여야 함 * 모태 출자비율을 60%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하되, 출자비율 50%를 가점상한(최대3점)으로 설정 (출자비율 50% 미만도 제안가능)
청년창업	○ 다음 ①, ②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①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②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펀드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모태 출자비율을 60%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하되, 출자비율 50%를 가점상한(최대3점)으로 설정 (출자비율 50% 미만도 제안가능)
기술지주	○ **(일반)** 창업·벤처기업에 60%이상 투자 ○ **(지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60%이상 투자(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통) 펀드당 모태펀드 최대 출자규모는 30억원
여성기업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①~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 ① 여성이 최대주주인 기업 ②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 ③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table>
<tr><th colspan="2">분야</th><th>주목적 투자 대상</th></tr>
<tr><td colspan="2">소셜임팩트</td><td>○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인 소셜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운용사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투자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판별표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운용사가 소셜벤처기업 정의를 다음에 따라 제안
① UN 지속가능개발(SDGs) 17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펀드 운용전략을 자율적으로 제안
UN SDGs : '15.9월 유엔 총회(Summit)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빈곤, 기근, 보건, 교육, 성평등, 물위생, 청정에너지, 고용,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있는 소비·생산, 기후 변화, 수중 생태계, 육지 생태계, 평화·정의와 강한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② 순수 비영리 조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
< 소셜벤처의 사업 분야(예시) >
<table>
<tr><th>구분</th><th>사회통합</th><th>사회문제(필요)</th><th>공동체(공공)</th><th>환경/생태</th></tr>
<tr><td>사업 분야</td><td>①취약계층 포용
②불평등 축소
③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td><td>①교육/저출산
②건강과 웰빙
③고용/일자리
④주택/주거
⑤문화
⑥사회적 책임 이행기업(CSR 등)</td><td>①공공장소 활용
②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td><td>①수질과 위생
②공해와 오염 개선
③기후변화
④청정에너지 등</td></tr>
</table>
※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td></tr>
<tr><td rowspan="2">소재부품장비</td><td>일 반</td><td>○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정부가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
- 다만,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td></tr>
<tr><td>프로젝트</td><td>○ 다음 ①, ②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망 소재부품장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① 정부가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가 추천한 기업
② 수입품 대체효과가 입증되거나, 수출 등 해외진출 성과가 뛰어난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이 급속히 증가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 펀드당 최대 50억원 까지 출자
※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td></tr>
<tr><td colspan="2">지방기업</td><td>○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td></tr>
<tr><td colspan="2">규제샌드박스</td><td>○ 다음 ①, ②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① 규제 샌드박스법*을 통해 특례를 받은 기업
* 중기부 「규제특구법」, 과기부 「정보통신융합법」, 금융위 「금융혁신법」,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②「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내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td></tr>
</table>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혁신성장	○ 혁신인프라(D.N.A : Data, Network(5G), AI) 및 3대 신산업 분야(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 ※ 펀드당 300억원 내외로 출자하여 4개 펀드 조성예정 * 펀드 제안규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펀드 규모 1,000억원을 가점상한(최대 3점)으로 설정 (펀드 규모 1,000억원 초과 펀드도 제안 가능)
스케일업	○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 펀드 해산시까지 펀드 전체 투자액에서 평균 투자금액이 기업 당 50억원 이상 이어야 함. ※ 펀드당 500억원 내외로 출자하여 2개 펀드를 조성예정 * 펀드 제안규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펀드 규모 3,000억원을 가점상한(최대 10점)으로 설정 (펀드 규모 3,000억원 초과 펀드도 제안 가능)
M&A	○ M&A 및 Buyout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해 신주투자 또는 구주인수의 방법으로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다음 ①~④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① 최대주주, ② 등기임원의 과반수 선임, ③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④ 투자한 투자기업이 중소벤처기업 등을 인수하여 상기 ①~③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는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하는 경우 약정총액의 40% 이내에서 가능 ※ 펀드당 300~350억원 내외로 출자하여 5개 내외 펀드 조성예정 * 펀드 제안규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펀드 규모 1,000억원을 가점상한(최대 3점)으로 설정 (펀드 규모 1,000억원 초과 펀드도 제안 가능)

4. 주요 출자조건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td><td>○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단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약정총액의 5% 이상</td></tr>
<tr><td>자조합의
투자의무</td><td>○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다만, 모태펀드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td></tr>
<tr><td>추가증액결성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td><td>○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추가 증액 결성방식으로 신청 가능
* 출자분야 및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의무 비율 등은 공고문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함(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은 40% 이내)
*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조합규약(안), 신규 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추가 증액 결성방식(Multiple Closing)은 동 출자사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액완료되어야 함</td></tr>
<tr><td>출자금 납입방식</td><td>○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수시납(capital call) 만 가능)</td></tr>
<tr><td>투자(납입)기간</td><td>○ 투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함
다만, 모태펀드 신규약을 적용할 경우 납입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td></tr>
<tr><td>존속기간</td><td>○ 존속기간 5년 이상</td></tr>
<tr><td>관리보수</td><td>○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보수 지급기준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의 경우, 2.1% 이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가능
- 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포함), 청년창업, 기술지주, 여성기업, 소셜임팩트, 소재부품장비(일반), 지방기업, 규제샌드박스 분야
- 지역기반 운용사(수도권 이외 본점 소재)</td></tr>
<tr><td>기준수익률</td><td><table><tr><th>기준수익률</th><th>분야</th></tr><tr><td>3% 이상</td><td>창업초기(일반), 청년창업, 소재부품장비(일반, 프로젝트), 지방기업, 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 스케일업, M&A</td></tr><tr><td>1% 이상</td><td>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기술지주, 여성기업, 소셜임팩트</td></tr></table>※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단, 해당 지분 콜옵션 미부여)</td></tr>
<tr><td>성과보수</td><td>○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td><td>○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예시)
<table>
<tr><th rowspan="2">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th><th colspan="2">조정 전</th><th rowspan="2">조정</th><th colspan="2">조정 후</th></tr>
<tr><th>관리
보수율</th><th>성과
보수율</th><th>관리
보수율</th><th>성과
보수율</th></tr>
<tr><td>300억원</td><td>2.5%</td><td>20%</td><td>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td><td>2.3%</td><td>24%</td></tr>
<tr><td>500억원</td><td>2.3%</td><td>20%</td><td>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td><td>2.0%</td><td>26%</td></tr>
</table></td></tr>
<tr><td>수탁회사</td><td>○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td></tr>
<tr><td>회계감사인</td><td>○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td></tr>
<tr><td>전자보고시스템</td><td>○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td></tr>
<tr><td>기 타</td><td>○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
○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 정관에 사업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② 한국벤처투자(주)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를 의무화하며, 사무수탁에 관한 제반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
③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투자 시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필수(단, 외부투자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
④ 후행투자는 조합원총회 특별결의 가결시에만 가능하며, 후행투자 총액은 조합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함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td></tr>
</table>

5. 인센티브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추가
성과보수</td><td>

○ 운용사는 다음 추가 성과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추가 성과보수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운용사가 수령할 추가 성과보수의 한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table>
<tr><th>순서</th><th>적용조건</th><th>적용분야 및 추가성과보수율</th></tr>
<tr><td>고용
창출</td><td>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td><td>(공통) 단, M&A, 소재부품장비(프로젝트) 분야 제외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td></tr>
<tr><td>투자
실적</td><td>① 신주보통주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② 창업초기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③ 지방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 ①,②,③ 중복신청 가능</td><td>(공통) 단, M&A, 소재부품장비(프로젝트) 분야 제외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 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td></tr>
<tr><td>M&A</td><td>전체 회수금액 중 M&A 방식*으로 회수한 경우
* 투자기업 인수자가 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① 최대 주주가 되었거나
② 등기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했거나
③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만 인정(단, SPAC 등에 매각하는 경우 불인정)</td><td>(공통) 단, M&A, 소재부품장비(프로젝트) 분야 제외
<table>
<tr><th>회수비율</th><th>성과보수</th></tr>
<tr><td>20% 이상</td><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가능</td></tr>
<tr><td>30% 이상</td><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가능</td></tr>
<tr><td>50% 이상</td><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가능</td></tr>
</table></td></tr>
</table>

</td></tr>
<tr><td>콜옵션</td><td>

○ 운용사는 모태펀드가 민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벤처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

<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 >

- 행사가격 = 원금 *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 ^{경과기간}
- 행사 기간 : 존속기간이 7년 미만일 경우 결성일로부터 3년, 존속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결성일로부터 4년
- 적용 대상 :

<table>
<tr><th>분야</th><th>콜옵션 부여 한도</th></tr>
<tr><td>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포함), 청년창업, 기술지주, 여성기업, 소셜임팩트, 소재부품장비(일반), 지방기업, 규제샌드박스</td><td>모태펀드 출자지분 50%</td></tr>
</table>

* 유한책임조합원의 콜옵션 행사는 행사시점 당시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

</td></tr>
</table>

6. 기타 사항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투자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의 3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조합결성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함.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통화는 원화로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 가능. 단,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할 경우, 운용인력의 신규 채용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 가능. 단, 조합 결성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소재부품장비(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출자는 별도의 심사기준 적용 가능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Ⅱ.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의시 가점 부여)

○ 약정총액의 30% 이상을 지방기업,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신주보통주** 투자로 제안하는 경우(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이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인 경우 우대하지 않음)

* 여성이 최대주주이거나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기업에만 한정

** 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투자 포함

○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지방 소재 운용사로 운용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일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외국 자본이 약정총액의 10% 이상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 기업 인증을 받은 출자자의 참여 확정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창업초기, 청년창업) 모태 출자비율을 60%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출자비율 50%를 가점 상한으로 설정 (출자비율 50% 미만도 제안가능)

○ (혁신성장, M&A) 펀드 제안규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펀드 규모 1,000억원을 가점상한으로 설정 (펀드 규모 1,000억원 초과 펀드도 제안 가능)

○ (스케일업) 펀드 제안규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펀드 규모 3,000억원을 가점상한으로 설정 (펀드 규모 3,000억원 초과 펀드도 제안 가능)

2. 선정배제·선정보류·선정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1)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설립 근거 법령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말함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시정명령 처분이 이행되었거나 업무정지가 종료되었음이 관계당국으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기간에 걸쳐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마.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바.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2항 준용)

- 채무 변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안서 접수마감일의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가결산 포함) 기준으로 판정하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단, 직전 분기말 기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 제출가능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문엔젤일 경우 신용등급이 NICE평가정보 기준 9,10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아래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신규 운용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이어야 함

**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 경력(민간, 대학 등에서의 투자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이 1년 이상인 운용 전담인력이어야 함

펀드 규모	최소 기준 인원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100억원 이하	1명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 2 참고

(2) 선정 보류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선정 취소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라.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단,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문엔젤일 경우 제외)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 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사.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아. 신규 운용인력 채용을 전제로 선정된 개인투자조합이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결성 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취소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거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본 제재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외국 자본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Ⅲ.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소셜임팩트,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프로젝트) 분야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

(예 : 해당분야 신청 운용사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에 전문가 자문단에게 투자분야에 대한 PT 후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심의 이전에 투자분야를 수정할 수 있음)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	'20. 3. 5.(목) 10:00부터 '20. 3. 12.(목) 14:00까지	제안서 접수 (온라인)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온라인 및 현장접수 가능
선정	'20. 4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20. 7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Ⅳ.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가. 온라인 접수

- (공통출자분야)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4.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붙임3. 참조)

- (개인투자조합)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4.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해 신청 정보 및 제출서류를 등록하고 제안서 원본, 제안서 제본 3부, USB메모리를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

http://install.k-vic.co.kr

나. 현장접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출자신청서 양식(붙임3.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엔젤투자본부,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출자 설명회(안)**

- 일 시 : 2020.2.20.(목)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 온라인 설명회 게시(예정)

  * 상기 일정은 특이사항 발생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Ⅴ.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Ⅵ. 문의 방법

○ 공통출자분야(개인투자조합 제외) : 02-2156-2178, jwsv@k-vic.co.kr,
02-2156-2474, fof@k-vic.co.kr

○ 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기술지주 분야 : 02-2156-2059, angelfof@k-vic.co.kr
02-2156-2477, angelfof@k-vic.co.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20. 2. 13.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별첨 1> 개인투자조합 신청 가능 운용사

○ 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분야 및 기술지주 분야는 다음 형태의 운용사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유형	업무집행 조합원	법적 근거	분야별 신청 유형	
			창업초기 (개인투자조합)	기술지주 (개인투자조합)
개인	**"전문엔젤투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	○	-
법인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	○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고시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겸영 지주회사 제외)** 단, 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 신기술사업금융업자 iii)「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iv)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	-

※ 단, 액셀러레이터(겸영, Co-GP 포함)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에만 투자하여야 함

<별첨 2>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5,000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개인투자조합]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개인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별첨 3>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투자집행 역량	운용사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사후관리 역량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수익률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기타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 개인투자조합 평가항목 : 조합 운용 안정성, 투자역량, 후속투자 유치, 사후관리 수준, 수익률, 보육역량, 가점 등

2차 심의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결성 가능성 등
운용전략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운용사	투자 실적 및 재원, 집중도 등
운용인력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기타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

* 개인투자조합 평가항목 : 펀드 결성 능력, 운용역량, 사후관리 수준, 수익률, 액셀러레이팅 등